

10.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제정 2022. 02. 25.

개정 2024. 07. 11.

제1조(설치 근거) 강진군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이사회 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3.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사설도장 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읍·면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07. 11.>
8.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규약 제37조에 따라 위촉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22.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